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8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허 영·황정아·김현정

박 정•박정현•박용갑

위성곤 • 박성준 • 소병훈

전재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하여금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2020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폐지된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준하는 경력 또는 직위를 지낸 법관이 수년간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형성 과정 검증에 필요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 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법관 및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 및 검사로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

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제1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제4조에 따라"를 "제4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로, "경우 또는"을 "경우,"로,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한다.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재산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
| 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 | |
|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 | |
| 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 • 직 | |
| 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 | |
| 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 |
|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 | |
| 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 |
|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 | |
| 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 | |
| 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 |
|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 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 <u>의 검사</u>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
| |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 |
| | 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20 |
| | 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 |
| 6. ~ 13. (생 략) | 6. ~ 13.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 | 4 |

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 1. (생략)
-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 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당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 4. (생략)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 2 | - |
| | - |
| | - |
| 제4조, 「인사 | - |
| <u>청</u> 문회법」 제12조에 따라 | |
| <u>경우,</u> | - |
| | - |
| | - |
| <u>필요한</u> | <u>-</u> |
| 경우 또는 인사청문과 직접 | |
|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 | |
| <u> </u> | |
| 3.・4. (현행과 같음) | |